

社會保障機構에 있어서의 再活事業 및

그 增進策에 對한 實態調查

—I.S.S.A 16차 총회 보고서— ✓

Dr. Choar les Berlicz (佛國 全國社會保障 機構

聯合 醫療고문)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保障機構의 再活事業 및 그 增進策에 對한

實態調查報告書

報告者: Dr. Charles Berlicz

(全國社會保障機構聯盟(佛) 醫療顧問)



머 리 말

이 보고서(Document)는 사회보장 기구(Social Security Institutions)의 재활(rehabilitation) 사업 및 그 증진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로 國際社會保障協會(ISSA) 회원국 기관을 조사대상자로 했다.

이 보고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세밀히 분석한 본문과 4개의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록 I은 질문서이다. 질문서는 이 실태조사의 기본으로 이것에 의해 ISSA 회원국 기관이 직접 관리 내지 경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피보험자를 위탁할 수 있는 현행 再活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부록 II는 질문서에 應信해 준 회원국 기관 목록.

부록 III은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조사자는 기본자료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스」 「노」의 간략한 답변을 하도록

~2~

諸機構 (Institutions) 에 요구했다.

그러나 각국마다 채택하고 있는 규정 (Provisions) 이 매우 달라 이러한 간략한 답변으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예스」 「노」의 간략한 답변을 보완하는 뜻에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요구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케 했다.

많은 기관이 제공해준 설명서는 再活분야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큰 가치가 있다.

이 실태조사의 기초가 된 질문서의 개요에 따라 이들 자료를 다음의 小項目으로 묶을 수 있었다.

a) 再活에 관한 주요法規의 약술 (질문서 제 1 에 해당)

b) 1) 재활 사업 (rehabilitation services) 및 그 기관의 형태

2) 受惠者 (Beneficiaries), 受惠者의 정의, 再活기관事業 (Service) 의 受惠를 받을 수 있는 권한 및 이에 대한 참여조건

3) 再活 사업 재정 (財政) (Financing)

4) 再活 기간 동안과 그 후에 지급되는 현금급여 (Cash benefits)

5) 再活 器具 (rehabilitation appliances) — 可
用 器具 와 그 給與 (Provision) 조건.

이와같은 분류로 종합하면 입수한 설명식 정보는
同一한 문제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다루어지
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부록 IV는 설명식 정보를 제공치 않고 질문서에만
답변한 여러 기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다음에서 질문 자체에 대한 분석과 답변으로 얻은
결과를 밝히겠다.

보고서

社會保障機構의 再活增進策과 事業實態

一, 질문서의 첫부분은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현행 法規 및 法令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 사회보장기관이라 함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再活을 마련해주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서 제1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같이 확고한 論難에 토대하고 있는 2개 원칙이 존재하므로서 결과하는 실정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하나의 원칙은 再活에 관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하고 명료한 법규를 채택, 사고 피해자 (victims of accidents) 와 病弱者 (invalids)가 어떠한 특권 ("Privileged" benefits)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도가 있는 방안 (Measures) 및 사업 (Services) 에 관해 특

별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사실 3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두번째 원칙을 따르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첫번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 어떤 국가에서 2 개의 원칙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관련된 것을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再活을 의료再活 (*medical rehabilitation*), 직업훈련再活 (*vocational rehabilitation*), 재취업 (*reintegration in employment*) 의 3 단계로 본다.

각 단계에서 문제 해결방안이 달라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제 1 단계인 의료재활 (*medical rehabilitation*) 은 극히 중요하며 대개의 경우 이를 위한 기술은 초기 단계에 사용,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료 (*general medical care*) 와 질병보험 (*sickness insurance*) 아래의 물질적

금여 (benefits in kind) 의 문제로 이해될 것이
다.

파라시 많은 나라에서는 의료재활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특별법의 채택을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

질문 (1) 의 답변 중 대다수가 의료再活法의 공포일
자와 사회보험 기관에 관한 기본문의 공포일자가 일치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해준다.

직업적 再活 (vocational rehabilitation) 에 관한
질문 (2) 에 대해 2 가지의 해석이 있으나 동일
한 논평을 내릴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 (rehabilitation) 이라는 용
어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질병이나 傷害를 입기 이전에 가졌던 직업에
대한 재훈련 (retrain) 방안이나 질병 (illness) 이나
傷害 (injury) 로 신체에 영향을 받는 경우, 피해자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職種 (New occupation)
에 대한 훈련방안과 결부시키고 있다.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再活의 개념이 보다 넓은

~8~

의미로 사용되어 再活策은 질병이나 사고발생 이전에
취업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질문제(3)은 첫 두 질문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질문서 제1, 제2의 주제인
다음 3 가지 점에 관한 것이다.

이중 첫번째 질문은 再活策(rehabilitation measures)
의 受惠者는 누구인가.

일부 국가에서는 再活기관의 혜택은 일정한 조건아
래에서만 제공된다.

이들 조건의 일부는 순전히 행정적인 것으로 보험
계획(insurance scheme) 아래의 자격문제와 결부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조건들은 근본적으로 의료적인
것으로 진단(diagnosis)과 점진(prognosis)에
서 결과하는 것이며 또는 医療社會的(medico-social)
성격을 띠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후자의 조건만이 존재한다.

제2의 질문은 사회보장법집행 피위임기관은 누구
냐 의 문제.

여기에서도 각국간의 실정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다시 다음에서 다룬다.

마지막 질문은 법률에 규정된 再活사업의 財源은
어디에서 得출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財源문제는 諸國의 특은 또 특수국
내의 現行法에 따라서 때때로 財源을 피보험자(*insured
person*)와 고용주(*employers*)가 내는 보험료(*Contri-
butions*)에 의해 보장되고 때론 國家 또는 고용주
만의 보험료, 그리고 때론 위의 3가지 방안을 혼용
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서 제1의 마지막 질문은 법률이 非직업적 원
인으로 인한 질병 및 병약(*non-occupational
sickness or invalidity*)과 구별되는 職業상의 원
인(*occupational origin*)으로 인한 질병 및 병
약에 대한 特別再活策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만일 이러한 특별법이 있다면 그것이 이론적으로 또
는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의 여부에 관

~10~

한 것이다.

17개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하고 있으며 19개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再活策에 대한 이러한 차별이 제공되는 혜택 (Services)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질문서의 제2부분이다.

제 2

질문서 제2부분의 목적은 非직업적 질병과 병약 (non-occupational sickness and invalidity) 에 대한 再活事業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란의 질문에 차별을 두는 국가의 기관뿐 아니라 당해 질병이나 傷害의 근원 (origin) 에 상관없이 單一再活策이 적용되는 나라의 기관들도 답변했음을 밝혀둔다.

A. 사회보장기관 (Organisation) 과 그들 기관이 제공하는 혜택 (Services) 의 類型에 대해 3 가지 형태를 고찰할 수 있다.

~1~

I. 再活혜택은 사회보장기구에 의해 직접 제공되며 이 경우 4가지 형태를 지적할 수 있다.

(i) 의료혜택 (*medical services*) — 일반 및 전문병원, 요양원, 회복 시설 (*Post-cure establishment*) 등.

23 개국 「노」, 8 개국 「예스」

(ii) 직업적 혜택 (*Vocational services*) (相談, 훈련 및 재훈련, 취업알선 (*placement*))

19 개국 「노」, 12 개국 「예스」

(iii) 특혜작업장 (*Sheltered workshops*)

26 개국 「노」, 5 개국 「예스」

(iv) 기타의 再活혜택

29 개국 「노」, 2 개국 「예스」

2. 再活혜택이 사회보장기관과 독립된 다른 公共 또는 사설단체 (*Public or Private bodies*)에 의해 직접 제공되며 사회보장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혜택에 대해 개별적 급여 (*individual benefits*)

나 일반적인 보조금 (general subsidies)의 형태로 재정적 기여를 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i) 「노」 12개국, 「예스」 19개국
- (ii) 「노」 16개국, 「예스」 15개국
- (iii) 「노」 18개국, 「예스」 13개국
- (iv) 「노」 20개국, 「예스」 11개국

3. 再活사업은 사회보장 기관과 관련 없으며 그로부터 재정보조 (financial support)도 받지 않는다.

- (i) 「노」 24개국, 「예스」 7개국
- (ii) 「노」 17개국, 「예스」 14개국
- (iii) 「노」 17개국, 「예스」 14개국
- (iv) 「노」 18개국, 「예스」 13개국

사회보장기관 (establishments) 및 제도 (organization)를 조사하므로써 적어도 다음 3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a) 국가에 따라 3가지 형태의 기관 모두 있는 것과 두가지 형태만 있는 것과 한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있다.

(b) 일부국가의 부정적인 답변은 이러한 제도 (establishments)가 아직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c) 질문서는 3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나 적당히 조직된 편제나 기관 이외에서 재고되는 再活사업은 배제했다.

B. 受惠者 (beneficiaries)에 대해 다음 2 가지 점을 고려했다.

1. 사회보장기관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再活法 (rehabilitation measures) 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위 (Category) 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는가의 與否.

답변은 아래 주어진 의료 및 직업상의 시사를 토대로 다음 3개 小項目으로 분류했다.

a) 보험가입만으로 再活法 (rehabilitation measures) 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

b) 用語사용에 모호한 점이 있으나 傷病

~14~
(invalidity) 의 개념이 통용되는 국가.

(c) 어떤 행정상의 조건 (administrative conditions) 이 요구되는 국가

2. 둘째로 대부분의 국가는 답변에서 再活法受惠의 자격이 각 件別 (each individual case) 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간단한 데서 매우 복잡한 것 에 이르기 까지 절차가 다르다.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담당의사의 의견, 또는 專門醫 (medical specialist) 의 의견 때로는 다수의 專門醫를 포함한 醫療委員會 (medical committee) 의 추천이며 이 밖에 의사 및 非醫務요원으로 구성된 醫療 및 社會共同委員會 (joint medical and social committee) 의 견해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病勢의 심각성 (seriousness) 과 또는 卹濟법규 (Proposed measures) 에 규정된 비용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으로 의료자활을 대상으로 하느냐 직업적 再
活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질문은 달라진다.

C. 財政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또는 같은 국가내에
서도 택하고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財源은 ① 국가나 보험금 또는 ② 이
兩者 아니면 ③ 사설기관 (Private Organization) 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모든 방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때론 보조금 (Subsidies) 이 지급되기도 하고 동시
에 再活事業 집행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日日비용을
도대로 현금급여 (Cash benefits) 를 제공하기로 한
다.

이와 관련하여 受惠者가 특별지불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지불치 않는다" 가 26 개 국이
고 '지불한다' 가 4 개국이 있다.

受惠者가 再活器具 (rehabilitation appliances) 에
관해서 특별지불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16~
'지불하지 않는다'가 26개국. '지불한다'가 4개국이었으며 후
자는 일부지불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D. 질문서의 다음 부분은 현금급여 (cash benefits)
에 관한 것이다.

1. 답변을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는 일반적으로
再活期間 전기간에 걸쳐 日日질병급여 (daily sickn-
ess benefits)의 형태로 지급되며 만일 현금급여가
일정기간에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중단되는즉시
법정출에 의한 잠정傷病연금 (temporary invalidity
pensions)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것이 밝혀졌다.

2. 再活이 성공시 當該者가 재취업하는 경우, 급
여는 어떻게 되는가

현금급여는 ① 변동이 없다. ② 減額된다. ③ 중단된
다 등의 3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 3가지 질문으로는 일어나
는 모든 경우를 「커버」 할수 없는것 같다.

같은 나라안에서도 法的규정이 서로달라 일률적인 답
변을 할수없는 것이다.

사실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再活이

- ① 질병보험 (sickness insurance)의 영역 또는
- ② 傷病보험 (invalidity insurance)의 영역 (framework)에서 실시되는가에 따라 다른것 같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질병이나 傷害의 원인을 구별하는 현행법규에 좌우되기도 한다.

- 재다수의 국가에서는 질병보험에 의한 현금급여는 再活 후 재취업한 이후에도 不變치는 양이며 그렇지 않은 양이라도 적어도 양분간 변동되지 않는것 같다.
- 재개의 경우 減額되고 이어서 중단된다.
- 아니면 재취업과 동시에 중단된다.

일반 傷病보험 (general invalidity insurance) 아래에서는 다음 3가지의 상황 (situation)이 일어날수 있다.

一 再活조치 (rehabilitation measures)로 傷病보험의 受惠조건이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히 제거된 경우 연금지급은 그 근거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단된다.

一 再活조치로 질병이나 傷害의 잔여흔적이 부분적으

로만 제거된 경우 연금율(rate of pension)은 비례해서 감소된다.

一再活조치가 연금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극히 제한된 법률에 의해서만 적용된다.

일부국가에서는 연금소득자로 재취업 할수 없어 독립근로자(independent workers)로 자립키로 결정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일괄지급하기도 한다.

E. 再活器具(rehabilitation appliances)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17 개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자에 대해 이들 器具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된다고 답변했고 11 개국은 사회보장기관(Social security institutions)이외의 타기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F. 질문서(questionnaire)가 정보를 얻고자 한 마지막 주제는 활동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再活事業(rehabilitation services)의 수 및 비용실태.

얻은 정보는 남들이 가는 여력까지 이유때문에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매 대수 국가는 再活사업비의 회수를 독립시키지 않았다.

더욱이 모든 답변이 이점에 관해 정보를 제공했다^{~19~}
해도 傷病者는 특수再活「서비스」 이외의 再活「서비스」를
받을수도 있으므로 실태를 단편적으로 밖에 반영치 못
한다.

再活「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establishments) 의
수다. 이들 기관의 病床에 대해 부차적 질문에 대해서
도 같은 말을 할수있다.

” 再活센터,, (“rehabilitation centres)라고 명명된 「센터」
만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것은 外傷(traumatology),
神經(neurology) 「류마티스」(rheumatology) 및 정신병(
psychiatric services) 치료를 하는 많은 일반및 특수병
원(Specialised hospitals)도 再活「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 제3

A. 질문서 제3은 질문서 제2에 포함된 질문과
중복된다.

그러나 직업상의 질병과 傷病(occupational sickn-
ess and invalidity) 바꾸어 말하면 고용사고(emplo-

ymment accidents) 와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s) 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질문한 것이다

의료원 (medical centres), 직업상의 相談 (Vocational counselling), 재훈련센터 (retraining centres) 등을 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들 기관이 고용사고와 직업병에 관한 법률의 受惠者에게 전용되는 것이 아닌것 같다.

B.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受惠者가 재활의 태백을 얻기 위해서는 15개의 답변이 지적한 대로 현행법규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격은 어느정도 重態인 질병과 상해에 한 주어진다.

반면 또 다른 경우에는 傷害정도가 행정상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러나 이 두경우 再活과 관련하여 의료요소 (medical factors) 에 중요성이 부여되고 재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사회 및 직업적 요소에 중요성이 주어진다.

C. 財政과 관련하여 또 2개의 基金源 (Sources of funds) 이 있다. 卽 고용주의 보험금 (contributions)

이나 국가 또는 兩者、 어느 경우에도 당해 피보험자의
보험금은 관여되지 않는다.

D. 再活중의 현금급여에 대해서 보면 응결일자 (the date of Consideration) 이전의 잠정적인 활동불능 (temporary incapacity) 기간에 재활이 있으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영향 (all the consequences) 이 소멸되면 중단된다.

연금 (pension) 이 이미 승인된 뒤에 재활이 일어나더라도 연금은 재활기간동안 유지된다.

再活이 성공하면 그가지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하나는 연금이 수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傷病 (invalidity) 의 감퇴 정도에 따라 연금이 수정되고 이 수정은 연금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수 있다.

E. 器具 (appliances) 는 대다수의 국가가 극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受惠者 (beneficiary) 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F. 통계자료에 대한 답변은 질문서 2의 경우와 유

~22~

사. 아무런 결론을 얻을수 없다.

X X X

질문서 3부에 대한 합변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수 있었다.

I. 경제발전의 정도가 어떠한 질문서에 제기된 문제를 이미 검토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는 몇 있다.

일부 국가에서 법규는 있으나 적용하지 않고있는것을 지적할수 있다.

의료시설 (*medical installations*) 의 불충분과 의무 및 준의무요원 (*medical and para-medical personnel*), 특히 専門医 (*Specialists*) 의 부족은 큰관란을 놓고 있다.

II.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법규 (*legal provisions*) 나 법령 (*regulation*) 에 의해서 兩活분야 에 큰노력을 기울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법규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

다양한 주장에 근거한 두원칙은 구별지을수 있다.

相對 대립되지 않는한 이들은 직업적再活 (Vocational rehabilitation) 에 있어 相對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의료재활 (medical rehabilitation) 의 기술은 완전한 자격을 갖춘 의료및 준의료요원 (medical and paramedical staff) 이 확보된 특수「센터」(Specialised centers) 에서만 응용되어야 하며 再活은 이들 기술이 效 과적으로 응용될수 있는 경우에만 실시.

지출비용에 대한 效 과를 보장토록 해야한다. 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의료再活조치 (medical rehabilitation measures) 는 가능한한 조속히 취해야하며 너무 번잡한 절차 (too cumbersome procedures) 나 지나친 要件에 의해 이를 지연. 傷害를 치유할수 없는 모험을 초래하는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Ⅲ. 직업상의 再活 (Vocational rehabilitation) 에 대해서 보면, 이론상 재훈련을 받을 患者의 능력과 노동시장 (Labour market) 에서의 고용가능성을 고려해

~24~

야 한다.

그러나 달성목표는 傷病者 (invalid) 나 傷害者 (injured person) 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occupational life) 에 복귀시키는 것이므로 이것은 쉽게 달성될수 없으며 일반적 여건이라 해도 언제나 성공할수있는 것은 아니다.

부록 I. 社會保障기관 (Social Security institutions)의 再活증진책과 사업실태조사 질문서.

머 리 말

이 질문서는 현행 再活사업 (the existing rehabilitation Services)의 전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고용 傷害 (insployment injuries)와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s)과 관련이 있던 故된 再活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고 (all contingencies)를 포괄하고 있다.

질문서의 제2부는 원인이 무엇이든 질병 (sickness) 및 傷疾 (invalidity)에 대해 획일적인 再活法 (uniform provisions)이 있는 국가에게 한정된 것이다.

일반적인 질병 (general sickness)과 傷害 (invalidity)에 대한 다른 再活 규정 (provisions)이 있으면 질문서 제II부와 제III부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

질문서에서 '기관' ('institution')이란 용어는 國際社會保障協會 (ISSA)의 모든 회원국 기관 (all member

~2b~

organizations)을 가르키는 것이다.

이 用語는 I S S A 산하의 모든 회원국 기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질문서 제II부와 제III부가 반드시 제I부와 결부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야 겠다.

再活사업이 (rehabilitation services) 입법화 되지 않은 국가의 기관 (member organizations)은 제2부와 제3부에서 그들 사업을 기술할수 있다.

제1부 입법화 (Legislation)

1. (a) 법률은 의료 및 치료후 再活 (medical and post cure rehabilitation)을 필요자의 전부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에 국한하고 있는가?

(b) 첫법안이 채택된 년도

2. (a) 법률은 필요자 전원에게 직업적 再活 (Vocational rehabilitation)을 제공할것을 규정하고 있는가 또는 일부로 국한하고 있는가?

3. 법의 주요구정에 관해 약술하라.

(a) 再活조치 (rehabilitation measures)의 受

惠者는 누구인가.

(b) 법률집행 기관(bodies)은 누구인가.

(c) 兩種사업의 財源은 무엇인가.

4 (a) 법률은 非직업적(non-occupational) 질병(sickness)이나 傷病(invalidity)와 구별되는 직업상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과 傷病의 재활에 대해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s)을 두고있는가.

(b) 「메스」번 질문서의 제2부와 제3부에 각각 별도로 답변.

제2부

非직업적 질병과 傷病에 대한 兩種사업(Rehabilitation Services) (兩경우에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직업상의 질병 및 傷病을 포함)

A. 사업형태(Types of services)와 그 조직(Organization)

I. (a) 以下の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兩種사업

(i) 의료적(일반 및 전문병원(general or specialised Hospitals) 「요양원(sanatoria), 사후요양기관(postcure establishments)

(ii) 직업적(相談(counselling), 훈련(training) 및 재훈련(retraining), 취업(placement).

(iii) 무경쟁작업소(Sheltered workshops)

(iv) 기타 兩種사업(Any other rehabilitation services)

2. (a) 以下の 기관(Institution)이 경비를 지급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public or private agency)이 제공하는 兩種「서비스」

(b) 可用「서비스」와 그 조직(Organization)을 약술하라

3. (a) 다른 공공 또는 사설 기관이 제공하고 또는 경비를 지급하나
費下의 기관(*institution*)이 再活 필요자를 위탁할수 있는 行
행 再活「서비스」

(b) 可用「서비스」와 그 기관 약술

B. 受惠者 (*Beneficiaries*)

1. (a) 법률은 費下의 機關(*Institution*)에 의해 보림에
가입되므로서 再活法(*rehabilitation measures*)의 혜
택을 받을수 있는 受惠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가?

(b) 그 범위(*Categories*)와 조건(*Conditions*)의
약술

2. (a) 再活法(*rehabilitation measures*) 受惠者의 자격
은 일반적으로 경쟁된 費下의 기관(*Institution*)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가?

(b) 자격조건(*Conditions of entitlement*)과 受惠절
차(*Procedures*)의 약술

3. (a) 再活 자격은 다른 공공 또는 사설 기관에 의해 결
정 되는가?

(b) 이 때의 결정 권한의 성격과 절차 약술

C. 財政 (*Finance*)

1. 費下의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再活 사업(*rehabili-
tation services*)

이 사업의 제원 출처 및 지출비용 결정 근거

2. 費下의 기관이 경비를 지급하고 다른 공공 및 사설
기관이 제공하는 再活「서비스」

기금의 출처 및 지출금 책정 근거

3. 다른 공공 및 사설기관이 비용을 지급하고 實下의 기관이 해당자를 위탁할수 있는 再活「서비스」.

기금의 (funds) 일반적 성격을 약술

4. (a) 受惠者가 특별지급해야 하는가.

(b) 要求되는 지급을 약술

5. (a) 受惠者가 再活器具 (rehabilitation appliances) 구입

에 특별지출을 해야 하는가.

(b) 요구되는 지급 약술

6. 再活기간중 또는 그후의 현금급여 (Cash Benefits)

1. (a) 재활기간중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이나 다른 「소스」 (other sources)로부터 이하한 현금급여가 제공 되는가.

(i) 사회보험 傷病 卹여 (social insurance invalidity

Benefit) 지급의 계속 여부

(ii) 추가 현금 급여 지급

(b) 급여 지급 계획 (scheme) 및 기관 (Institutions) 을 시사 하라.

~30~

(2a) 성공적인 復活과 취업후 사회보장혜택금납여 (social insurance cost benefits) 지급상태

(i) 金額 (amount)의 變遷

(ii) 金額의 減縮

(iii) 支給의 중단

(b) 金額의 減縮 및 중단 시기

(c) 傷病游動者의 특별을 위한 一時性 支給 (Lump-sum grants) 가능성의 여부

E 再活器具 (Rehabilitation Appliances)

(1a) 再活器具는 커류의 기관에서 공급되는가

(b) 어떤 器具가 어떤 조건 아래 이용될수 있는가

2. (a) 再活器具가 다른 공공 또는 사설 기관에 의해 支給되는가

(b) 器具종류 및 조건약술

F 통계

통제 제3부는 제2부의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부록 II

결문시에 簡便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이탈리아」, 瑞西 「이스라엘」, 인도 「뉴웨이」 외에 20개국으로 모두 32개국이다

부 록 III

제 1 부

다음에 관한 주요법규의 요약

- (a) 再活策 (rehabilitation measures)의 受惠者
- (b) 再活사업기관 (organization)
- (c) 財政

캐 너 더

—— 全國 保健 및 福祉局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 (a) 「퀘벡」(Québec) 州를 제외하고 66년 1월 1일 실시된 「캐너더」 연금계획 (The Canada Pension Plan)은 노동불능 (disability) 의 경우의 再活策 (rehabilitation measures) 을 규정하고 있다.

70년 5월부터 보람에 가입한 노동력상실자 (disabled contributor)에게 노동불능연금 (disability pension) 을 지급하게 된다

가족에 대한 노동불능 보조금 (supplementary

~32~

disability benefits) 은 68년 2월 부터 노동불
능인 미망인과 홀아비 및 18세 이상이나 노
동 불능자인 부양가족 1명을 거느린 未亡人에
게 지급된다.

보험금 최소유예기간 (the minimum qualifying
period of contributions) 을 경과한 피보험자
나 보험금 수취 가족이 노동불능으로 연금을 신청
시 이를 지급받는 경우 노동불능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합리적인 再活구제策 (rehabilitation mea-
sures) 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평가 (assessments) 와 再活구제策의
비용은 행정비로 「케너더」 연금계획계정 (the
Canada Pension Plan Account) 에서 지불된다.
노동불능자로 판정되려면 신청자나 수혜자는 정
신적 육체적 장기 重환자로 상당한 소득의 직
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수 없는 자야 한다.

再活구제策은 적당한 치료 (suitable treat-
ment),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또는

시립고용(trial employment)에 의해 노동불능
을 감퇴시키고 노동능력을 개선시킬수 있다고
간주할때 권고될수 있다.

피보험자(an insured person)가 정당한 이
유없이 노동불능 또는 再活구제策 평가를 받지
않으면 노동불능자로 판정되지 않는다.

프 랑 스 ————— 사회보장기구전국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a) 모든 피보험자(insured person)나 그의 정
당한 청구자(claimant)는 건강상태가 再
활을 요구하고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受惠
권이 정 당히 입증되면 再活구제책(Rehabi-
litation measures)을 적용받는다.

(b) 再活구제법집행기관은 아래와 같다.

프. 불구근로자 직업 및 사회再活 위원회

(*Higher Council for the Vocational

~34-

and Social Rehabilitation of Handicapped Workers)

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

(i) 다음 사항에 대해 公共 또는 私的 이니셔티브 (public or private initiative)를 고무한다.

- 재훈련 (retraining)
- 기능적 재활 (functional rehabilitation)
- 직업적 재활 (Vocational rehabilitation)
- 재활 및 취업 (rehabilitation and placement)
- 무경쟁 노무의 조직 (organization of sheltered work)
- 불구자 아동 및 성인에 대한 강습 교육 및 직업 훈련

(ii) 각종 통계의 종합

(iii) 직업적 再活 연구 장려

(iv) 불구자 (handicapped persons) 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legislation) 및 법규 (regulations) 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자문

部의 각 위원회는 불구자의 직업적 재활을 지도하고 고용주가 불구노동자 (handicapped workers) 고용 법규를 준수하는가를 감독한다.

사회보장기구 (Social Security bodies) 는 의료 재활 (medical rehabilitation) 및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제정을 부담한다.

재활이나 훈련은 공공 또는 사설기관 (public or private establishment) 에서 할 수 있다.

(c). 재활책 (rehabilitation measures) 의 제정을 부담하는 법률에 규정된 財源 (resources) 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질병위험계정 (sickness risks account) 이나 고용주의 보험료 (contributions) 만으로 충당되는 고용傷害위험계정 (the employment injury risks account) 에서 뱉출된다.

연금급여 (cash benefits) 의 일부는 건강 및 사회복지예산에서 충당된다.

28~

英國

건강보험省 (Ministry of

Health contribution)

再活과 관련된 사업(예를들면 傷者 結核환자 노동 불능 재향군인 (Disabled ex-servicemen) 등등)은 보건법 (the public Health Acts) 이나 고용법 (Employment Acts) 또는 가치평가체 (agency of Valuatary bodies) 에 의해 점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의료평가체의 医療재활 (medical rehabilitation) 이 오랜동안 병원에서 실시되었다.

영국의 현재 医療 및 치료후 再活사업 (medical and posture rehabilitation services) 은 아파 다음의 두렵병에 근거한다고 할수 있겠다.

- 국민보건법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 노동불능자 고용법 (the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a) 國內에 정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再活하도록

책의 혜택을 받는다.

(b) 再活법집행위원회 기관은 보건省 (ministry of Health) (영국과 「웨일즈」 「스코트랜드」 가정 및 보건부 (Scottish Home and Health Department) (「스코트랜드」) 보건 및 社會福祉省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북부 「아일랜드」)

(c) 再活사업은 稅務 大藏省 (the Exchequer) 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방의 보건 및 福祉사업은 지방세 (Local taxes) 로 모금된 기금에 일부 의존한다.

모든 근로자가 지불한 소액의 週刊부담 (a small weekly contribution) 금도 있다.

医療再活에 관한 법안은 질병 (sickness) 과 傷痍 (invalidity) 의 근원 직업적 또는 비직업적 을 구별하는 再活 특별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美國

社會保障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따라서 자주 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医療再活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5년미만 된 永住의 국민과 몇몇 제외 규정에서 제외되는자는 예외로 한다.

医療再活은 다음의 두 상호 보완적인 보험계획 (contributory programs) 아래 실시된다

(1) 医療보험 (hospital insurance)과 이와 관련된 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통해 고용주의 그리고 self-employed를 3자가 공동으로 財政을 부담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内科医의 치료 (physicians' services)와 다른 醫療「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醫療계획의 財政은 모든 피고용자가 每月 지불하는 3「달러」의 보험금 (monthly premium payment)과 연방 일반세입 (Federal general revenues)에서 할당되는 이와 동등한 예산으로 충당된다.

社会保障法律은 社会保障荷 (SSA) 이 계약을 체결

한 財政 및 행정 보조기관 (intermediaries) 의 협력
을 얻어 집행한다.

직업적 再活은 노동불능 受惠者 (Disability benef-
iciaries) 와 卍 직업再活 기관 (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을 지친 신청자 에게 배
택이 매들어진다.

卍 직업再活 기관은 직업再活法 (the Vocational reha-
bilitation Act) 에 의해 승인된 계획 또는 노동불
능수혜자의 경우에는 특별계획에 의해 승인된 諸 계획을
감독하고 집행한다.

卍 기관 (state agencies) 의 財政은 연방의 卍 卍
증여 원조 계획 (a Federal - state Grant-in-Aid
program) 아래 연방 및 卍정부가 각각 등밀액의 부담
공등으로 부담 한다.

노동불능 受惠者에 대한 사업은 연방 노동불능보험
신락기금 (the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 에서 財源이 엄출된다.

법률의 집행은 卍 직업再活 기관에 의해 수행 되고.

社会保障局 (S.S.A) 과 직업再活局 (Vocational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법률은 非職業上の 질병과 상해와 구별되는 직업상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 및 傷害에 대해 따로 특별 재할거정을 두지 않고 있다.

瑞 典 (스웨덴) 연방 사회보장청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a) 연방傷痍法 (Federal invalidity legislation)

에 의해서 노령불능자나 傷痍초기의 위법을 받는자는 소득능력을 회복 할당 보도 또는 장려하는데 필요한 再活구호策 (rehabilitation measures) 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요점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 (physical or psychic incapacity) 의 위법을 대상으로 한다.

受惠자격 (Entitlement) 은 위에서 언급한 구호책이 피보험자 (insured person) 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될 때부터 발효한다.

피 보림자가 연방 老齡 보림과 유가족보림 (survivors' insurance) 법에 의해 老齡연금 (old-age pension) 자격을 얻을 때 그의 再活권도 受惠權은 소멸되고 再活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 儲蓄정 (provisions) 집행의 책임은 傷病 보림위원회 (the invalidity insurance committees) 에 있으며 이 위원회는 件 (case) 별로 受惠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각 州 (canton) 에는 의사 再活전문가 (rehabilitation specialist) 고용 및 훈련전문 (employment and training specialist) 법률가 및 사회사업가의 각 1 명으로 구성된 傷病 보림위원회가 있다.

연방 각 부서 (federal departments) 의 행정요원과 해외 거주 피보림자를 위해 특별 傷病 위원회 (special invalidity committees) 가 있다.

모든 위원회는 감독기관 (supervisory Authority) 일반적으로는 담당기관 (competent institution) 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불능자의 (disabled persons) 직업적 再活과 직접 관련하여 II의 지부 (II regional

~42~

offices) 가 있다.

직업보도 (vocational guidance) 와 고용 (employment) 再活구호책 (rehabilitation measures) 의 적용을 감독한다.

지방 (regional offices) 은 개의 위치와 언어를 고려 지역적인 때를 하여 설치한다.

老齡 및 유가족보험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의 평준화기금 (equalisation fund) 은 傷病보험법집행에 책임을 진다.

평준화기금은 傷病보험위원회 (the invalidity insurance committees) 와의 협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결정을 통고할 책임을 진다.

25개의 州 평준화기금 (cantonal equalisation funds) 2개의 연방평준화기금 (federal Equalisation fund) 77개의 聯合平準化기금 (Federations of equalisation funds) 이 있다.

(c) 再活구호책의 세정은 법률에 의해 피보험자와 고용자의 보험금 (contributions) 공식보험금 (

official contributions) 으로 증당하게 되어 있다 ^{~113~}

유 고

연방사회보장기구 (Federal

Social Security Institute)

(a) 医療 및 직업再活구호策 (medical vocational rehabilitation measures) 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 노동력 상실 戰傷英병사 (war-disabled soldiers)
 - 廢疾者, 노동력 상실 傷英병사
 - 傷英民兵隊 (disabled member of the people's militia)
 - 傷英對空포대요원 및 기타 軍교육요원
 - 전쟁고아 (war orphans)
 - 피보림자 = 一疾 傷廢 범주 (invalidity category)
- 의 노동불능 근로자와 노동불능자는 아니나 적절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무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피 보림자

~44~

◦ 피보핍자 및 연금자 (*pensioners*)의 病弱兒 (*invalid children*).

◦ 遺孀연금 (*a survivor's pension*) 수혜자인
자녀

(b) 보건기관 (*the Health institutions*)은 의료처방
집행의 책임을 진다.

노동불능근로자 피보핍자의 병약아 이밖에 再活을
필요로 하는者에 대한 직업훈련은 노동불능자의 형태
(*type*)와 상황 (*condition*)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서 실행된다.

그러나 노동불능의 성격상 특별 상황 (*special condi-
tions*)에서 직업훈련을 요하는 노동불능근로자의 경
우에는 직업 再活은 무성생 작업소 (*sheltered work-
shops*)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노동불능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노
동조건과 부담한 의료감독 (*medical supervision*)을
해야하는 특별성우에도 再活은 再活院 (*rehabilitation
Institutes*)으로 알려진 특수기관 (*special*

institutions) 에서 행해진다.

직업훈련은 또한 기술학교(technical schools)의 전 훈련과정 또는 필요하면 성인교육기관(adult education institutions) 에서 행한다.

(c) 사회 보험 해당자의 再活사업의 재정은 傷病財源(resources of the invalidity) 과 연금 보험기금(pensions insurance funds) 에 의해 충당된다.

西 独

國內 事故보험협회연맹 (Union of

Municip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es)

(a) 再活구호책의 수혜자는 피보험자와 그들의 가족으로 한다.

(b) 관계기관(the bodies concerned)의 資格要件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uniform regulation)이 없다.

事故보험기관(incident insurance institutions) (공업 및 농업직종별연합(occupational associations))

연방공공 국가 ("land") 당국, 인구 50만 이상의 슈타트
구단 (communes) 및 구연맹 (unions of communes)의
주재사고보험기관이 사고보험 (municipal accident insur-
ance bodies) 구조책을 집행한다.

연금보험 (pensions insurance) 은 「페르린」 피고용
자 연맹 보험협회 (the Federal Insurance Instit-
utes for Employees in Berlin) "국가보험협회", (
the "Land" insurance institutes) 연방철도의
선원협회 광산 기금 (mining funds) 이 졸업기관이
失業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의 집행기관
(competent bodies) 은 누렐베르크 (Nuremberg) 의 연
방직업 및 실업보험협회 (the Federal placement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stitute) 등이다.

(c) 전쟁 피해자 (war victims) 에 관한 費用 지출은 연
방공공 (Federal Authorities) 이 부담한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과 실업보험 (unemploy-
ment insurance) 은 보험금서,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租稅 (taxation) 으로서 충당한다.

印度

피고용자 사회보험조합 (Employees'

Social Insurance corporation)

(a) 受惠者는 48년 피고용자보험법 (the Employees' Social Insurance Corporation)에 적용되는 피보험자이다

(b) 피고용자 보험법의 집행은 同法제3項에 의해 피고용자 사회보험조합이 행한다

(c) 再活補助費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한도내에서 同組合이 피고용자 보험기금 (Employees' state insurance funds)으로 증장한다

再活에 대해서 同法은 직업상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 및 傷害와 非직업상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 및 傷害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장협회 (Society) (기관 (Institution))는 피고용자 보험법 제19項의 권한에 따라 다음의 것을 제공한다

(1) 補綴器具費 (prosthetic appliances)의 공급 : 직업중 傷害나 기타이유로 수족을 잃은 피

보험자는 同組合의 責任 부담으로 補綴器具를 얻는다,
수송, 여행, 호송 등의 비용과 교환(replacement)
보수(repair)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

결병으로 수족을 절단하는 경우에 補綴器具는 수족
을 상실케 한 여건이 피보험자가 결병급부(sickness
benefit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발생하는 것을 조
건으로하여 공급된다.

(고용 傷害의 경우 補綴器具의 공급은 58년에,
非고용 傷害(non-occupational injuries)의 경우에
확대 적용된 것은 58년이다)

고용 傷害(employment injury)의 결과 양下枝를
상실한 경우 「휠, 체어」 수동 3발자전거(tricycles propel-
led by hand)는 의로기판의 차륜에 의해 同組合의 任
역 부담으로 被保險者들에게 공급된다.

(ii) 義齒(dentures) 안경 補聽器(hearing aids)의
공급: 고용 傷害로 잇몸을 잃거나 시력을 상하거나
커머머리가 된 경우 피보험자는 義齒, 안경, 聽話器(
acoustic instruments) 등을 무료로 임의 구

업 할 수 있다

~49~

이스라엘 전국보험협회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고용자 (Employed) 또는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s) 들은 고용상해급여 (employment injuries benefits) 가 다같이 보장되어 있다

고용상해 또는 질병 (employment injuries or disease) 으로 인한 노동불능자에 대한 현금급여와 직업 재활 「서비스」 는 전국보험협회 (NII) 가 직접 지급한다

고용상해보험 (Employment injuries insurance) 에 지정된 들 직인 모든 의료급여 (All medical benefits in kind) 와 출산보험 (Maternity insurance) 에 지정된 임원은 각 보건원 (health establishment) 을 통해 실행되며 NII 가 비용을 부담한다

늘 캐 이

전국사회보험협회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Institute)

(a) 再活구호책의 受惠者는 「캐이스」에 따라 좌우된다.

고용事故 (employment accident) 卽 前職에 다시

취업할수없은자는 해당傷害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직장을 우선적으로 薦任 받는다

즉각적인 취업 (direct work placement)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직업을위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NII는 보험협회지부 (the local insurance offices)의 도움을 받는다. 賠償은 계획 (scheme)에의해 정상비용 (regular expense)으로 지급되며 보험금소득 (the income from premiums)으로 충당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1) 「늘 캐 이」의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에 가입한 전원

(II) 전국보험협회 (NII)는 지부 (local insurance offices)와 郡 의회 (local County Boards)의 贊助를 얻어 再活(서비스)를 擔當한다

(c) 賠償은 계획에의해 정상비 (regular expense)로 지급되며 보험금수입 (the income from premiums)으로 충당한다. 직업상의 原因으로인한 傷害및 질병과 非 직업상의 原因으로인한 傷害및 질병을 구별한다.

아이 일랜드 — 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医療再活에 있어서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법률을 (医療 (medical treatment) 와 医療再活 (medical rehabilitation) 을 구별짓지 않고 있으므로 언급할 수 없다.

직업훈련에 있어서 보건법 (the health Act) 47 번은 결핵과 척수회백질염 (脊髓灰質炎) (poliomyelites) 환자 및 회복자에 대해 그들 건강상태 (condition) 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토록 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규정했다.

保健法 (53 년 제정) 은 63 번에 제정된 細則 (Regulation) 에 의거 모든 노동불능자에게 再活훈련 (rehabilitation) 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育수에 대한 직업보도 (Vocational rehabilitation) 별도규정은 내년에 제정되었다.

(a) 医療再活의 受惠者: 저소득층환자 (low-income group patients) 사회복지법 (social welfare Acts) 해당 여부에 관계없음: 중산소득층의 임신부 (maternity cases) 학교신체검사 (school medical examination) 에서

1)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각소득층의 아동, 特殊전염병

(specified infections diseases) 환자

이분류의 해당자는 무료로 의료再活 (medical rehabilitation)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중간소득층 (middle income group) 즉 年俸 1천 2백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층 환자, 사회복지법 (Social Welfare Acts)에 의한 보험가입자 및 年間 課稅 기준가액 (annual rateable value)이 6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농부등 중간소득층 환자들은 1일 1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으로 醫療再活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취업 (employment)을 위한 직업훈련은 소득 (means)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불능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특수 교육과 훈련을 인가된 기관 (approved institution)에서 행한다.

(b) 保健당국 (Health Authorities) 즉 地方自治체의 疾病保健 당국 (Local Authorities)은 直接 또는 차선 병원과 (Voluntary hospitals) 다른 기관 (agencies)의 시설을 이용해서 醫療 및 職業再活을 행한다.

이들 기관은 또한 育人的 교육 및 산업훈련(Industrial training)에 대해 책임을 진다.

(c) 보건사업 (health services)의 재정은 地方稅 (Local taxation) 와 國稅 (National taxation) 兩方面으로 충당된다.

병원건물과 설비를 위한 상당한 資金은 병원독점기금 (hospital sweep stakes fund) 에서 인출한다.

育人的 再投資는 보건당국과 이기관의 증여 (Grants) 에 의해 충당된다.

- 법은 직업상의 질병 및 傷患을 구별되는 직업상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하여 특별재활구정 (special provisions for rehabilitation) 을 두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 社會部 (Ministry of social affairs) 직업保險의 자격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受惠者 (Beneficiaries)

공업 및 농업부분의 임금소득자 (Wage earners)

(b) 집행기관 (Solempotent Bodies) 일반事故 보험회

및 (Gener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e) 農林社會

保険協会 (social insurance instituti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1) 財政 (Finaneing)

고용주의 법정보험금 (Employer's statutory contributions)

과 국가 및 지방예산

就業알선기관 (The employment service)은 재정 (means)이 허락하는 한도와 훈련훈련기관 (training organization)의 테두리내에서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법은 비취업중의 질병 및 傷害의 구별되는 취업중의 취업중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해 특수재활 구경을 둔다

제 2 부

「재활서비스」의 종류 및 그 기관별책

(a) 사회보장기구 (social security institutes)

가 직접제공하는 「서비스」

(b) 비용은 사회보장기구가 부담하고 제공하는 다른기관 (agency)이 행하는 「서비스」

(c) 비용의 부담과 제공을 he기관이 행하는 「서비스」

케 네 디 — 국립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再活策은 일반적으로 기초(既造) 医療 및 직업개발계획에 의거 수행된다.

이들계획은 그 財政이 醫療保險 (hospital insurance) (醫療保險 및 진단법령) (Hospital Insurance and Diagnostic Services Act) 직업개발 (노동불능자의 직업개발법 및 노동불하)의 직업훈련 (기술 및 직업훈련 보조법 (The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Assistance Act) 제정 6항)에 관한 연방과 州법정에 의해 공공기금 (public funds)으로 충당된다.

醫療再育 (Medical rehabilitation)

노동불능의 형태 (Type of Disability)에 상관없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主要多目的 재활기관은 포괄적인 医療再活부 (Hospital rehabilitation departments) 「 재활센터」 및 卍직업 재활계획 (The Provincial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이다.

各卍 (province) 마다 医療再活시설은 敎育병원 (the teaching hospitals) 과 계획적 재활「센터」에 집중되어 있다.

医務지도 (medical direction) 하의 다른 재활 계획은 특수한 부류의 노동불능자 (disabled persons) 를 지원한다.

대각수가 卍보건강 (provincial health departments) 에 의해 운영되는 公衆결핵요양원 (the public tuberculosis sanatoria) 과 정신병원 (Mental Hospital) 은 각종의 재활 중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차적인 「서비스」 (follow-up services) 와 직업재활 (vocational rehabilitation) 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 (community

agencies)과 협력한다.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나 이틀기관 (Institutions)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물리 및 직업요법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사회봉사, 직업훈련
교육 및 오락 「서비스」가 있다.

가장 많고 또한 가장 다양성을 띄고있는 보건기관 (health agencies)은 특수노동불능 집단으로 대상으로
하는기관이다.

이틀기관에는 「알콜」 중독자 (alcoholics), 盲人
聾啞 및 難聽者 (the hard of hearing) 관절염 (arthritis)
및 「류마티스」 환자 (rheumatism patients), 半身不遂
(paraplegics), 痲疾病患者 epileptics) 및 추풍 硬化症
환자. multiple sclerosis patients) 정신병환자
(the mentally ill) 정신박약자 (The mentally retarded)
및 기타 집단을 위한 기관이 있다.

I. 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醫察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평가 (assessment)와 상담 (counselling) 치료

및 기타 회복서비스 (medical and other restorative services) 직업훈련과 취업등으로 되어있다.

평가와 상담은 무료이며 다른 서비스는 부담능력 (means)이 없는자에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된다.

직업훈련 서비스는 「캐나다」 직업훈련계획 (the Canadian Vocational Training Program) 제 5항에 의해 제공되고 취업상 불리한 여건 (occupational handicaps) 을 가진 노동불능자의 취업은 고용 서비스의 특수서비스 항목에 의해 실행된다.

직업훈련계획은 省長 省조정관 또는 省長 省행관 (a provincial co-ordinator or director of rehabilitation) 에 의해 관장되고 있으며 이들은 12주에 대한 각종 재활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 (interagency arrangements) 공보 (public information) 및 기타 분권 (other aspects) 에 책임을 진다.

무경쟁고용 (sheltered employment) 각 省에 자선기관 (voluntary agencies) 은 노동불능자에게 보호고용 (Protected employment) 을 제공하는 各種 무경쟁 작업소 (sheltered workshops) 을 설치했다.

적차 많은 기관이 「재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어 省나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계획계획에 필수기관으로 간주되고있다.

노동자 보상계획 (Workmen's Compensation programs)

医療보조조항 (the statutory medical aid provisions) 에 의해 보건 복지국은 傷害노동자 (injured workman) 를 항구적 능력상실 (premanent disability) 을 최소화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復職케 하기위해 이에 필요한 회복 서비스 (restorative services) 와 가능러지원 (personal aids) 을 용인할수있다.

자선기관 (Voluntary Agencies) : - 자선기관은 비 직업재활계획 (the provincial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에 중요한 의뢰처 뿐만아니라 직접 각종의 本質的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프랑 스

전국 사회복지장년맹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I. (a) 직업재활을 실행하는 의료 「서비스」는 그 기술 기관 (technical organization) 에 관한 다음의 일반적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付地및 건물 (premises) 요원 설비등이 예상

~60~

환자수에 충분해야 한다.

집대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기관에는 再治療 상담(Consultation)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질병의 성격에 따라 개조할수 있는 치료실이 갖추어져야 한다.

医療 및 준 의료원 (medical and para-medical personnel)은 환자수와 질병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수준이하로 떨어질수 없다

◦ 보험 (insurance)에 의한 모든 치료의 감독을 담당하는 醫師 1名

◦ 환자 55명에 의사 1명

◦ 환자 10명에 대해 정신요법 재교육 (physiotherapeutic re-education) 전문가 1명

◦ 환자 20명에 작업요법요원 (ergotherapist) 1명

◦ 환자 200명에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1명

◦ 직업 「서비스」에는 部處級 (the Departmental

~61~

level) 노동불능자 지도위원회 (a Committee for the Guidance Disabled Persons) 가 있으며 노동자의 재훈련 (retraining) 또는 직업적 재훈련 (Vocational re-training) 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社会保障기금 (The Social Security Funds) 은 병세 (病勢) (case) 별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직업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유지한다.

직업훈련 또는 재훈련 (Vocational training or training) 은 다음 기간 중 어느 곳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i) 재향군인 및 전쟁피해자 (the Ministry of Veterans and War Victims) 의 직업학교

(ii) 노동 불능자를 위한 사회적 보조기관 (the organization for social assistance) 이 인정한

센터

(iii)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의 직업훈련 센터

~22

(iv) 사회보장기금 (the Social Security Funds) 이 관리하는 기관 (Establishments)

(v) 찬숯별이 승인한 私設 기관 (private establishments)

(vi) 특정고용주 (Particular employers) 이들 기관에서 근로자는 그의 신체적 지적 능력 (physical and intellectual aptitudes) 에 알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받는다.

재교육이 끝난 뒤 보직 (placement) 은 고용알선 기관 (employment services) 과 협의하여 결정된다.

원부사회보장기관 (Social Security bodies) 은 취업알선업무 (placement services) 를 겸해 직업재 훈련을 받은 불구자에게 알맞은 직업을 알선해 준다.

무정정작업소 (Sheltered workshops) 는 신체적 결함 (physical defects) 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쪽에게 취업을 개량한다.

이 작업소는 영리 (profit) 를 목적으로 하지 않^{~83~}
으며 작업은 보통 그 일부를 하청계약 (sub-con-
tract) 하여 보완한다.

이 작업소는 정상적인 근로자 (workers in normal health) 다수 고용, 불구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산하 기관 (establishments)
에 재정균형 (financial equilibrium) 을 유지토
록 한다.

○ 불구의 성격 (nature) 및 輕重 (gravity)
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직업 및 사회활동에 다시 참
여시키기 위해 다른 형태의 再活이 사용된다.

○ 시간제노동 (part-time work) 輕業 하지 않
고 復職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 불구자를 위해 輕保된 특수업무와 행정
분야의 輕노동 (light employment)

○ 활동기관 (the motor system) 의 장애자를
위한 家內的 업무 (home work) 할당 센터

대기업체 (Large Undertakings)는 현행직무의 3「퍼센트」 비율로 불구자를 채용하거나 채용을 제의 하여야 한다. 傷疾병사 (wor-disabled persons)의 경우에는 그 비율은 10「퍼센트」가 된다.

특수무경쟁공장 (Specified sheltered workshops)이나 작업보조 「센터」 (centers for assistance through work)에서 불구노동자 (handicapped workers)가 만든 제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자 명시표를 붙일수 있다.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 국

보 건 성

(Ministry of Health Contribution)

医療 「서비스」는 그치질병 (illnes) 이든 노동력상실 (disability) 이든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치료의 혜택을 준다.

모든 대규모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s)은 신체 및 직업적 의학과 (physical and occupational medical departments)를 두며 모든

~45~

환자가 입원환자(*in-patients*)나 외래환자(*out Patients*)로서 필요로 하는 醫療再治를 받도록 설비와 요원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보다 어려운 환자의 재활에 중점을 두는 많은 再治센터와 醫療上の 이우에서 事後療養이 필요한자를 위한 靜養院(*Convalescent hospitals*)이 있다.

병원 당국이 일부 사설 및 자선단체(*private or Voluntary institutions*)와 계약(*Contractual arrangements*)을 맺고 일부 환자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일부 再治치료(*rehabilitation treatment*)를 포함한다.

미 국

社會保障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신복기금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s*)은 개개인의 직업재활기관(*VR agencies*)

~66~

이 사회보장노동불능보험계획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下的 노동 불능 受惠者 (disability beneficiaries) 에게 제공하는 포괄적인 再活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

卞의 노동 불능 受惠者를 위한 재반 「서비스」 계획 策에 미달된다면 사회보장국 (SSA)은 다른 공공 또는 私設 기관 또는 개인과 이러한 「서비스」 에 대한 契約를 체결할수 있다.

사회보장노동불능 受惠者 (Social Security disability claims) 이 거부된 사람은 연방이 승인한 계획아래 활동하는 卞 직업재활 (State VR agencies) 기관에 위탁된다.

卞 VR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방의 卞 補助 金 計劃 (Federal State grant-in-aid program) 에의해 재원이 撥출된다.

연방정부는 일반세입 (general revenues) 에서 卞에 金 額을 提供하는데 이것은 직업재활기관 運營 費로 卞가

책정된 기금의 액수와 관련된다.

적당한 경우 노동불능 受惠者 청구자(disability claimants)는 재취업알선기관(the state employment service)이 취업을 추천하고 장애자의 再活에 특별원조(Service)가 필요한 경우에 政府 또는 사설 保健복지기관(governmental and private health and welfare agencies)이 담당한다.

유 고

연방 社會保障院

(Federal Social Security Institute)

医療재활센터는 자치제 (self-governing principles) 원칙의 독립기관 (independent institutions)에 의해 조직된다.

완전한 의료療法 (full medical therapy) 을 이 센터에서 혜택 받을 수 있다.

즉 醫療재활의 면에서 노동불능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된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대해서도 規定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자치제의 원칙에 따라 裝置되고 운영되는 노동조직(worker organizations)에서 주로 행하여진다. 직업再治療 傷病노동자(invalid workers)의 고용에 증대한 자적이 일어날때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조직과 같은 자치제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무정채공장(sheltered workshops)에서 제공된다.

무정채 공장은 독립기관이며 이들은 각종기관(Social Security bodies)에 의해 설립될수 있다.

印度

被雇用者 社会保險組合

(Employees' Social Insurance Corporation) 정형(orthopaedic care) 정신요법(physio therapy) 직업요법(vocational therapy) 補綴(prostheses)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이러한 기관으로 「뉴델리의 의약및 再治療회(the Institute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in New Delhi) 「뭄바이」의 全印度의약및 再治療회(the All-India Institute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뭄바이」의 補綴器具 「센터」

(the prosthetic Appliances Centre) 「뉴텔리」
의 「티타스람·샤」 整骨院 (the Titathram Shah
Hospital) 을 들 수 있다.

아이일랜드

사회복지省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노동 불능자 (the disabled) 에 대한 의료 「서비스」
(health services) 와 직업훈련의 제공은 保健省
(Department of Health) 의 전체 지휘 감독하에
서 활동하는 지방보건당국 (the local health auth-
orities) 의 책임이다.

의료 「서비스」 는 주로 郡단위로 조직 되었으나
痲痺 整形 小児科 등 일부 「서비스」 는 지역단위로 조직
되어 있다.

의료 「서비스」 는 보건 당국이 자신의 기관 (ins-
titutions) 에서 또는 자선병원 (voluntary hospitals)
및 다른 기관 (organization) 과의 협약 아래 행한다.
직업훈련은 노동 불능자에게 무료로 실시하며 지방 보
건 당국에 의해 훈련을 위탁 받아야 한다.

~110~

훈련 센터는 지방보건당국으로부터 훈련비(Training fees)를 받는 자발적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각종형태의 노동 불능자에 대한 医療 및 직업재활을 장려하기 위해 1955년 국가후원단체(State-sponsored body)로 전국재활기구(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Rehabilitation)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전국 医療再活센터 整 센터(Limb-offitting centre) 補聽사업(ahearing-aid service) 평가(assessment) 및 직업보도사업(vocational guidance service) 직업요법환자의 훈련센터(a training centre for occupational therapists) 등을 운영한다. 이기관은 여러훈련 센터의 훈련생(trainees)에 대한 醫療감독을 하며 再活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발적 단체(voluntary organization)의 諸活動을 調整한다.

이스라엘 「쿠파트 홀림」

(Kupat Holim)

쿠파트 홀림 센터 (the Kupat Holim Center)

는 백 7개의 침대를 갖춘 병원을 갖고 있다.

시설은 보원가임자가 임의 이용할수있으며 또한 다른곳 및 施設病院에서도 마찬가지다.

「쿠파트 홀림」의 정신 병원 (psychiatric hospitals) 들은 직업요법 (Vocational therapy services) 을 병행하고 있다.

46개의 義足手 협회 (ambulatory institutes) 와 정신요법 병원 (institutes of physiotherapy) 의 대 다수는 再治 임무 (rehabilitation work) 와 관계가 있다.

오스트리아 社 會 部 (Ministry of Social Affairs)

고용 「서비스」 기관은 특별법에의거 설립된 각종 再治 기관 (rehabilitation bodies) 과 관련없이 독자적인 직업보도 (Vocational guidance) 와 事業 斡 旋 (placement services) 으로 직업 再治 에 책임을 진다.

고용 「서비스」 기관 (placement) 은 훈련의 지도

~m~

의 再活 목적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취업알선(placement)은 제외하더라도 고용 서비스 기관이 직업재활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benefits)는 모든 人士와 기관과(offices)의 밀접한 협력(collaboration)에 의해 증여된다.

필요하면 직업보도(vocational guidance)에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자는 심리확자가 작성한 심터적이고 논리적인 능력검사(psychological examination of capacity)에 의존한다.

참가자는 피보험자와 보험기관(Insurance body)과 合議하여 再活계획을 준비하며 이계획에 따라 피 보험자에 대한 직업 및 보완훈련 또는 재훈련을 행한다.

필요한 경우 고용 「서비스」 기관은 자발적으로 보험 기관의 부담하에 피 보험자의 훈련을 지도 할수 있다.

1 불구자(Cripples)를 위한 특수직업훈련 계획은 연방기술협회(the Federal Technical

~ 73 ~

Institute) 에서 담당한다. 이런 협회는 오오스
트리아에서 가장 진보 되었다.

여러과정이 끝나면 고용 「서비스」 기관은 당해 불
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곤란점을 고려하여 就
業방법 (weans of placement) 을 제시한다.
항구적인 종사 (permonent occupation) 를 보
장하는 적절한 직장을 발견하기 위해 특수 광고 기
업체 순방 작업 자세를 개조하기 위한 특수조치
(원거리거주 노중 不能者의 경우 직장에 가까운
집에 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폐계의 경우 노동
局 (labour administration) 의 고용 「서비스」
기관은 再活교육을 받은자 (the rehabilitated pe-
rson) 의 관심을 피악 이따금 지나친 보호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직업적 곤란을 예방 하는데 힘써
할 책임을 진다.

이런 점에서 노동 불능자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
(occupational and social integration)
이 장려된다.

~224~

능력 감퇴자의 취업을 위한 무정장공장 (sheltered workshops) 을 고용「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西 独

(i) 농업 老齡보償 기금연맹 (Union of Agricultural Old-Age Insurance Funds)

이 기관의 자체의 再活「센터」를 갖고 있지 않다.

医療「서비스」는 농민에 대한 老齡원조 (old-age assistance) 와 관련하여 조직과정에서 행하여진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절차는 종합이나 전문 병원 또는 요양원 (sanatoria) 에 空席이 있는지의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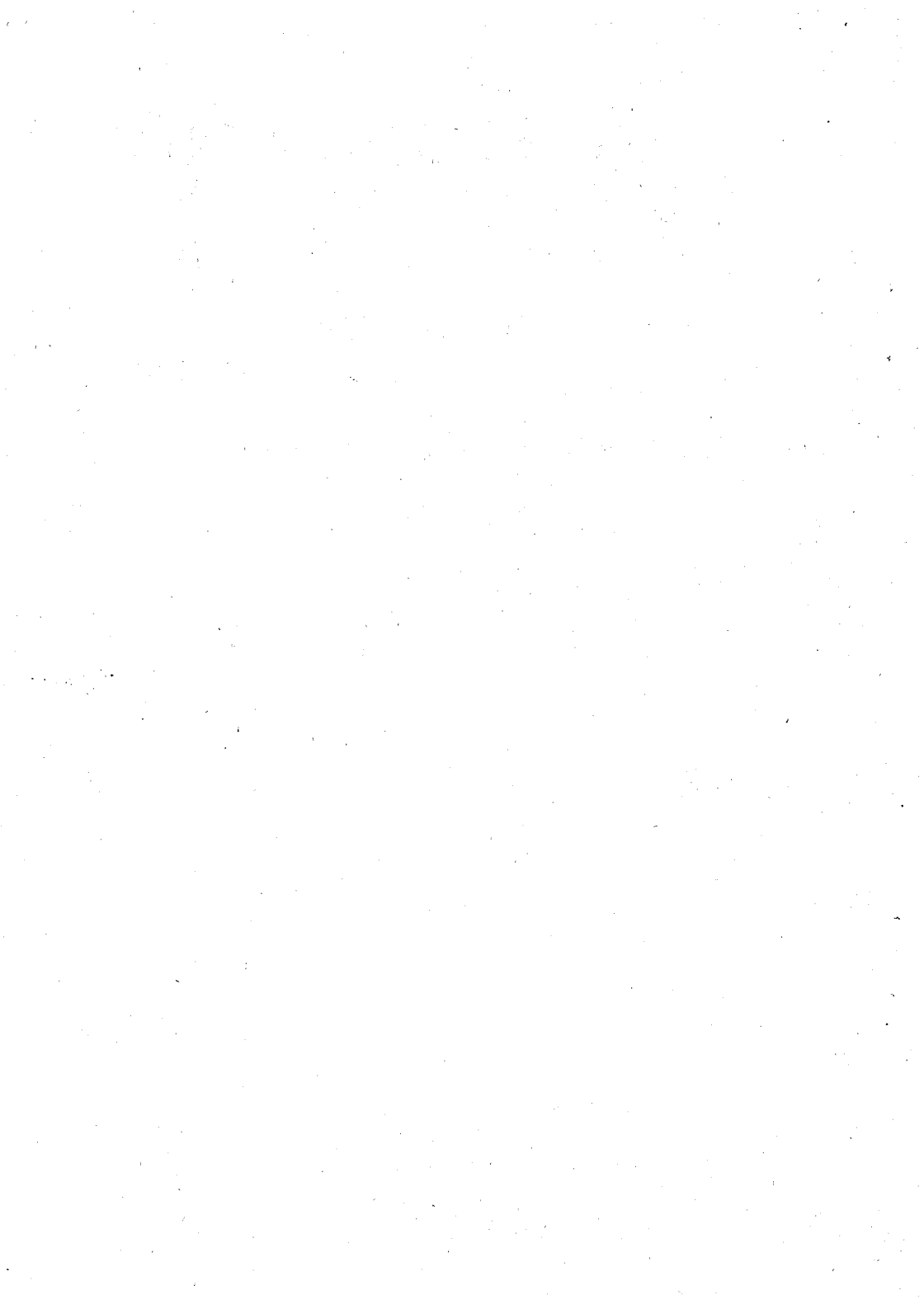
(ii) 고용事故보償기금연맹 (Federation of Employment Accident Insurance Funds)

(a) 질병기금 (Sickness Funds) 에 의존하는

센터는 통상 치료후 서비스 (post-cure services) 를 제공치 않는다.

b) 질병 기금은 再活 「서비스」 의 財源이 아
~75~
니다

c) 질병 기금에 의해 떠 보듬자는 각종 기
관에서 관리하며 財政을 갖고있는 요양소 (Conva-
lescent homes) 나, 유사한 기관으로 事後療養 (rest
cures) 을 위해 보내진다.



2, 再活手段策(Rehabilitation measures) 受惠者 ^{~97~}

- (a) 受惠者の 범위 (categories)
- (b) 수혜자격조건 (Conditions of entitlement)
- (c) 절차 (procedure)

캐 나 다

保健福祉省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캐나다」 연금 계획 (The Canada pension plan)

의 再活手段策은

- ① 지정된 회수의 보험금을 지불한 노동불능피
보험자 (the disabled contributor) 와
- ② 노동불능 미망인 (disabled widow) 및
- ③ 노동불능 홀아비 (disabled widower) 그리고
18세 이상의 노동불능 자녀를 가진 미망인의
범주에 드는 노동불능유가족 (disabled
survivors) 에 대해 적용된다

노동불능연금 (disability pensions) 의 신청
자나 受惠者가 再活手段策을 이용할 수 있는

~18~

조건은 규정 (Regulations) 에 밝혀져 있다

기본 원칙은 「캐나다」 연금제도가 이용할 수 있는 치료 (available restorative treatment) 또는 그 등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적 「서비스」 (vocational service) 로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노동불능 연금 수령자는 이러한 제관 「서비스」 를 이용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능력은 피보험자의 본업 (usual occupation) 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한 직업과 관련하여 평가 된다

아직 확정 되지 않았으나 자급자족 (self support) 에 필요한 최소소득은 노동이 상당한 소득을 가져 오는지의 여부를 평가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再活 「서비스」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두가지 주요條件은

- ① 노동 불능연금을 신청한 피보험자 (contributor) 는 「캐나다」 연금제도 (the Canada

~ 27 ~

pension plan) 에 최소한의 요건 기간 동안

기여 했다는 것과

- ② 노동 불능의 판정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라는 것이다.

노동 불능은 신청자가 자립자족할 수 없다고
評價할 정도로 심각하여 한다.

만일 수령자가 이제는 노동 불능자가 아니라고
설정되면 피보험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노동 불
능 연금은 (Disability pension) 중단 될 것이다.

(1) 노동 불능 피보험자 (disabled contributor)

노동 능력 상실 피보험자 (disabled contributor)

는 보험금 지불 기간 (contributory period)

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적어도 1년
5년 동안 연금 계획에 보험금을 지불했어야
한다.

보험금 납입 기간에 이러한 1년의 수가

10을 초과하면 적어도 1년으로 마지막

10년 중 5년 동안 지불했어야 한다.

유예기간 (the waiting period) 3개월을
가산하면 첫노동불능 연금은 70년 5월에
지급될 수 있다.

- (ii) 노동불능 미망인 (Disabled widow) 남
편이 사망시 노동불능이 되어있거나 후에
노동불능이 되어 유가족연금 (survivor's
benefit)을 청구할 자격을 갖춘 미망인
에게는 사망한 피보험자 (the deceased
contributor)가 적어도 3년 또는 10년
이하 아니면 보험금 지급기간의 3분의 1
동안 보험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최초의 노동불능
사망시 연금은 68년 2월에 지급될 수
있다.

- (iii) 노동불능 홀아비 (Disabled widower)
노동불능 홀아비 연금은 사망한 피 보험
자의 홀아비에게 지급되며 사망한 아내는
최소자격기간 동안 보험금을 납입 했어야 한다.

최소 자격기간은 위의 노동불능 미망인
의 경우와 같다.

(IV) 18세 이상의 노동불능 자녀를 가진
미망인.

부양자녀 (dependent child) 는 18세
이상의 노동불능자로 미혼 자녀이어야
하며 18세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후
출판 노동불능이어야 한다.

미망인은 전령에 제한없이 노동불능
성인자녀를 가졌고 그 자녀가 계속
노동불능이면 계속 급여 (continued
benefit)를 청구할 자격을 갖는다.

프랑 스

全國 社會保障聯盟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a) 모든 피보험자와 그의 정당한 제행권자
(rightful claimants) 는 보험의 행정적
조치를 이행하는 한 医療 및 事後療養

~82~

再活補助策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능적 재활 (Functional rehabilitation)

자격은 일반적이다.

이스라엘

쿠파트 홀림 (Kupat

Holim)

보험에 가입 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再活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서비스」는 무릎이나 整形기구 (orthopaedic
appliances)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늘웨이

國立保險院 (The

National Insurance Institution)

再活원조 (rehabilitation aid)는 건강보험계획
(The Health Insurance Scheme) 하에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건강보험계획은 「늘웨이」의 모든 거주자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사실 모든 국민이 再活원조의 혜

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관계법 (The Act relating to Health Insurance) 에 해당되는者는 치료를 받은 후 先天的 또는 後天的 疾病 (congenital or acquired disease) 노증력의 영구적인 감퇴로 자립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再活「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이밖에 再活원조는 양분간 자립능력이 있더라도 노증력이 감퇴된자에게 주어진다.

再活원조 제공에 관한 이보다 확대적인 「케이스」 (thomore extensive cases) 는 전국보험협회 (The National Insurance Institution) 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케이스」 를 제외하고 결정권은 郡위원회 (the Local County Boards) 와 지방보험기관 (The Local insurance offices) 에 위임한다.

전국보험협회 (NII) 가 결정하는 「케이스」 는 지방보험기관과 郡위원회가 추천하여 준비한다.

오스트레일릭

社會保障省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무료로 치료와 교육 (treatment and training)

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傷病 및 미망인 연금자. (invalid and widow

pensioners)

○ 질병 실업 및 특수 受惠者로 再活치료 및 교

육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training)

을 받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

○ 결핵수당 (tuberculosis allowances) 을

받는 자

○ 14세와 16세 사이의 아童으로 치료와 훈

련을 받지 않으면 16세가 되어 傷病연금

(invalid pensions) 을 신청할 수 있

는者

適格 (eligibility) 의 주요 조건은 해당자의 26 주

간에 걸린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증력상실 또는 작업에 상당한 「해고책」 이나 취업할 수 있는 것

해당자는 3년이내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한다

靑年 (adolescents) 을 제외하고 再活의 자격은 첫째 해당자가 사회보장성제 (D.S.S) 지급하는 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뜻중 자신의 「이니셔티브」로 再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치료의사의 위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통상 절차는 연금 (pension) 이나 급여 (benefit) 의 증여는 마찬가지로 部의 기록을 再活 医療 상담자 (rehabilitation medical consultant) 에게 回送 그가 기록된 정보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再活이 필요할 것 같은면 해당자를 再活 「서비스 센터」 (the Rehabilitation Service Center) 에 불려서 再活 医務 상담자 (rehabilitation medical

~86~

consultant)의 직업상담자 (vocational counsellor)
가 「인퇴부」를 갖는다.

14세와 16세 사이의 아동 (Adolescents)은
중상 불부자 복지자선기관이 위탁한다.

오스트리아

전會省 (Ministry of

Social Affairs)

(1) 전會省 再活부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一般的으로 법률로 정해진다.

연방 기술협회 (the Federal Technical
Institute)에 대한 신청은 고등 「서비스」
기판을 통해서 행해지며 연방전會省 (the
Federal Ministry of Social Affairs)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ii) 「오스트리아」 사회보험협회 연맹

(Federation of Austrian Social Insurance
Institutes)

(a) 연금보험협회 (pension insurance insti-

tutions) 은 피보핍자와 연금자 (pension-ers) 에 대해 癆瘵 노등 또는 근로불능 이 극복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경우 처 료를 행한다.

노동력의 유지, 회복, 향상을 위한 치료 중 직업훈련 給與가 피보핍자와 연금受領 者에게 지급된다.

피보핍자는 연금보핍기관 (pensions insurance institutions) 의 裁量에 속하는 離職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 離職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詳述 하는 指示각서가 있다.

(b)와(c) : (a)에서 시사한 바와같이 再活구호책 에 대한 법적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케이스」별로 再活조치를 취할지 여부의 취한 다면 어떤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며 老齡연 금자 (old-age pensioners) 에 대해서는 제 훈련은 제공되지 않는다.

3 「각종再活서비스」의 財政 (Financing)

- 受惠者 (beneficiary) 의 특별 지불

프 랑 스

國立 社會保障聯盟 (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I. (a) 각종 「세회」, 租稅, 稅捐 등등) 의 徵收 (Financing) 과 「서비스」 의 이용 (운영비, 보수, 設備 費 등) 은 그 財源이 區別된다.

사회보장기관 (Social Security bodies) 소속 機關 (Establishments) 에 對한 投資 資金은 保健 및 社會복지 資金 (Health and Social Welfare Funds) 에서 引出된다.

이들 資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保險金 (contributions) 의 引出 費를
- 保險金 延遲 (滯) 費 金과 保險金 증가
- 可拂 資金 (disposable funds) 의 利息

○ 행정비 잉여금 (administrative surplus)

의 일부

투자 財源額은 감독관청인 사회부가 명백히
계정한 지시각서에 의지 사회보장기구
管理協議會 (The Administrative Councils
of the social security bodies) 가 결
정한다.

諸사업의 운영비는 사회보장기관이 피보험
자세정에서 지급하는 일일비용으로 증장된다.
이 일일지출금은 질병보험세정 (Aickness
risks account) 에 算入된다.

(b) 사회보장기관은 그들의 의견 및 사회복지기
금으로 공공기관 (public establishments)
(병원, 학교등) 이나 사업의 일부가 再活
사업 (rehabilitation care) 인 비영리
시설기관 (non-profit private estab-
lishments) 의 투자에 참여한다.

이러한 투자의 참여는 課조금과 票子도

~90~

가장 낮은 계층의 대부분 행한다
 재활사업의 운영은 치료를 받고 있는 피
 보험자의 계층으로 사회보장기관이 지급하
 는 일일비용으로 부담한다

(O) 피보험자를 치료하는 모든 再活事業기관은
 사회보장기구가 피보험자 계층으로 지급하
 는 일일비용을 받는다

특별지출에 대해서 말하자면 諸給與額
 (the amount of benefits) 의 20「퍼
 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
 보험자가 부담한다

실제로 医療재활을 필요로하는 重症인
 경우 모든 비용이 면제된다

그리나 피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할때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 환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금(reimbursement)에서 控除한다
- 또는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91~

Fund)에서 피보험자 비용의 보조를
받는 기관이 직접 收金한다

영 庫 大藏省 (Ministry of
Health contribution)

병원「서비스」에 포함된 再活「서비스」는 주로
大藏省 (the Exchequer) 이 재정을 맡고 있으
며 병원「서비스」를 포함하는 國立 보건「서비스」
(N.H.S) 기관의 비용은 모든 근로자가 매주 일
부를 부담한다

병원「서비스」의 예산은 매년 議會에서 결정
되며 現存 병원의 예상운영비와 예상 유지비에
기초를 둔다

이밖에 신설병원건물을 포함하여 주요개찰비가
매년 議會에서 결정된다

규모는 可變的이며 다른 필요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財政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瑞 西

聯邦社會保險廳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질병보험기금 (Invalidity insurance funds) 은 지역「체적」에서 관리하며 이를 위해 매년 예산이 관계장관에 의해 책정 동의를 받는다.

再活「서비스」의 財政基金은 피보험자 및 고용주의 보험금 (contributions) 과 행정기관의 보조금 (official contributions) 에서 인출된다.

직업보도 및 의료 구호비는 再活관청 (rehabilitation offices) 앞으로 변상되며 그 규모 (the amount) 는 발생비율을 충분히 辨濟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카모는 중요한 再活구호費를 적응하는 책임을 전 기관의 동의에 의해 정식으로 확정된다.

보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피보험자 /인당 약 3「프랑」 또는 그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회사로부터 추가보험금 (supplementary contributions)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이 적자를 메우지 못하면 보험기관 (Insurance institutions)은 다시 잔여적자의 반을 책임진다.

유 고

연방사회보장협회 (Federal Social Security Institute)

재원에 필요한 財源은 건강보험금 (the health insurance fund)과 傷病 및 연금보험금 (invalidity and pensions insurance fund)에서 인출되며 이기금은 사회보장보험금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에서 인출된다.

이스라엘

쿠파트 할림 (Kupat Halim)

비직업적 原因에서 생긴 질병과 傷害에 대한 再活「서비스」의 기금은 국민소득에서 인출되고 비

~94~

보험자와 고용주의 보험금에서 충당된다.

印度

被雇傭者社會保險組合

(Employees Social Insurance Corporation)

公共 및 사설기관이 제공하는 再活「서비스」는
피고용 차폐보험기금 (the Employees State In-
surance Fund) 에서 재정을 영출한다.

과 정부는 의료 급여비의 변제를 지원함이 「서
비스」의 실제 비용이 변제된다.

受惠者 (beneficiary) 는 再活「서비스」에 대
해 특별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

아일랜드

社會福利省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흡수에 대한 再活「서비스」의 재정은 일부
는 國稅 (general taxation) 일부는 地
方稅 (local taxation) 또한 일부는 자선
기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屢々受惠者의

필요를 고려하여 猶々費用이 결정된다.

- 중간소득층 (middle income group) (소득 1천 2백「파운드」 미만의 소득) 의 환자는 1일 10「실링」을 초과 하지 않는 비용으로 의료再活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1) 社會省 (Ministry of Social Affairs)

직업보도와 취업「서비스」(Guidance and placement)의 재정은 일반 행정비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로 충당된다. 훈련에 필요한 재원은 훈련중지를 위해 증여되는 보조금 (subsidies)과 비록하여 실업보험대부 (unemployment insurance credits)로 충당한다. 고용「서비스」기관은

비용 부담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과 더불어 훈련비 전액

또한 사주 훈련 (residential courses)인

경우 직업再活 훈련기간중 훈련소 (training institute)에 입소한 피보험자에 대한 숙

식비 전액을 공동 부담 한다.

노동불능자의 修習 (apprenticeship)費는 훈련

~ 98 ~

기간중 분할 지급되는 훈련비 (means of a training grant) 로 보통 「서비스」 기관이 지불한다.

(ii) 직업 학교 (Vocational schools) 에 대해 다음의 특별 규정 (special regulation) 이 있다.

- 受惠者가 거주비를 부담하며 再活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 담당 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受惠者는 곤궁에 처한 경우에 「체이스」 별로 무료 거주지를 제공한다.

거주비는 1월 30 「달러」 으로 특별로 支拂한다.

그리고 受惠者는 再活 재료 (rehabilitation material) (整形器具 補廢器 補綴器具等 (orthopaedic, acoustic or prosthetic appliances)) 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다.

늘 魏 이

國立 保險院 (National

Insurance Institution)

再活費는 사회보장계획 財源에서 정상비 (regular expense) 로 負擔되며 이 계획의 財源은 피보
험자 및 고용주의 보험금과 시 및 國家 (the municipality and the state) 에 의해
負擔된다

4. 현금 급여 규정 (provisions of cash Benefits)

- (a) 再活受惠 기간중 (during rehabilitation)
- (b) 再活受惠 이후 (after rehabilitation)
- (c) 일시 지불 (Lump-sum payments)

캐 너 더

保健福祉部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保健福祉部長은 65년 3월 11일 의회에서

정책 선포 (policy statement to parliament)

에서 이미 노동불능자로 판명되어 노동불능연금

(disability pension)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관계기관의 추천에 의한 치료나 직업훈련을 받

거나 또는 임시고용 (trial employment) 되

는 동안 급여를 상실 하므로써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disability pension)과 기타 소득과

노동불능 수혜자 (disabled beneficiary)의

財源을 충족시키기 公的扶助 수준 (public

Assistance levels) 이하인 경우에 지방복지국
 (provincial welfare departments) 은
 「캐나다」 원조규정 (provisions of the Canada
 Assistance plan) 에 의지 보충적인 재정원
 조와 관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 원조계획은 65 년에 실시될 예정인데
 빈곤한 사람 (persons in need) 을 돕기 위한
 聯邦 및 지방 재정분담계획 (shared federal -
 provincial program) 이다.

또 다른 보충적생활 유지수당 (supplementary
 maintenance allowances) 의 제원은 지
 방 직업재활계획이다.

선발된 노동불능 受惠者는 이 계획에 위탁된다.
 再活수호책 (rehabilitation measures) 이
 受惠者가 자립 (self suppling) 할 수 있는 정도
 까지 성공적이면 그의 노동불능에 대한 평가는
 이이상 노동불능이 아니라는 판정을 가져올 가
 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의 노동불능 연금 (

~ 100 ~

disability pension) 은 중단된다.

부분적인 노령불능 연금에 대한 기금 (*provision*) 은 없다.

현재의 관세에 선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s price index*) 와 다른 요소와 관련하여 저 최소「블럭」 소득 수준을 비교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통제된 작업조건 (*controlled work situation*) 에서 소득능력을 공정히 시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령불능자 직업再活法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에 의거 노령불능자의 자립에 필요한 장비 (*tools*) 와 설비 (*equipment*) 가 제공된다.

프 랑 스

全國租会保障聯盟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a) 질병보험제책 (*the sickness insurance scheme*)

의 경우

일정한 医療조건과 자격에 따라 피보험자는 3년 동안 일일급여 (daily benefits)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1년 동안의 추가 기간 동안 1일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의 再開와 작업상태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 피보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을 탈진하기 위해 재훈련을 받거나 직업보도를 받아야 한다면.
- 1일 재훈련급여 (daily retraining benefit)와 소득의 합계는 같은 직종 (same occupational category)에 종사하는 노동자 1인의 총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보험자의 소득이 이익금을 초과한다면 급여는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사회보장기금이 담당 하고있는 직업재훈련費

~102~

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된다.

- (i) 재훈련소 (retraining establishment)의
자의 여비
- (ii) 실제의 재훈련비
- (iii) 직무 수락비
- (iv) 보험금 납입 (insurance contributions)
- (v) 특수 補綴器具 (particular prethetic
appliances) 費

그리고 보조증여 (assistance grants)를
할 수 있다.

일반 계획 (general scheme)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에게 이들 급여는 질병보험 또는
상병보험 이니 것 때문이든 主要 사회 보장 기금
(the primary social security funds)
에 의해 지급된다.

(b) 상병 보험 계획 (invalidity insurance

scheme) 에 의지 부금의 지급은 피보험자
의 소득이 일정수준(病弱以前의 소득) 에
도달할때 중단된다.

그리고 소득이 再活과 자취업의 결과인때에
는 부금의 일부(fraction of the pension)가
제속시급된다.

결명보험(sickness insurance) 아래에서 현금
급여(cash benefits)의 지급은 작업능력 이
前殘 소득의 3분의 2를 감소시키는 파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때까지 再活과정을 원
료할때 중단된다.

再活결과 노동능력이 3분의 2로 감축되면
피 보험자는 前職 소득의 한계내에서 자선
의 소득과 누락되는 傷病연금(invalidity
pension) 을 받을 수 있다.

피 보험자가 재취업 이전에 傷病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은 再취업 기간중 감소되지
않는다.

~104~

선액증여 (Lump-sum grants) 는 직업상 의 사고 (employment accidents) 희생자 에게만 지급되며 이들은 또한 공업, 공예, 농업, 유통업의 구매를 위해 無利子대부 (free loan) 를 받을 수 있다.

미 국

社會保障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연금 급여는 사회보장 노동불능자 계획 (Social security disability program) 에 의거 사회 보장국에서 지급 한다.

노동불능급여 (disability benefits) 는 9 개 월 동안의 시험작업 ("trial work") 기간과 추후 3 개월 동안의 조정기간의 성과에 근거하여 상당한 소득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후 면 증단된다.

우 고

聯邦社會保障院 (Federal

Social Security Institute)

(a) 피보험자는 再活기간동안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현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b) 작업에 의한 傷病者로 직업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자는 해당직업 (corresponding job)에 취업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의 재정적급여 (financial benefits) 를 받을 자격이 있다.

(i) 지칭 받은 就業에 앞서 폐기기간중 지급되는 임시수당 (temporary allowances)

(ii) 시간제 고용 (part time employment) 중 지급되는 급여

(iii) 새직장의 저소득 (low earnings)을 보상하는 급여

再活후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은 再活중 지급되는 현금급여와 동일하지 않다.

瑞 西

聯邦社會保障庁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예상된 傷病연금 (invalidity pension) 권리의 취직을 再活기간중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는 연3월 생산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의 소득 능력이 50 퍼센트 미만이면 日給 급여 (daily benefit) 를 받을 권리가 있다.

再活과 취직 (placement) 에 성공한 후에는 日給급여는 再活훈련을 거친者の 소득능력이 50 퍼센트 이하인 한 계속 지급된다.

피보험자는 再活이 완료 될때 까지 日給급여를 받으며 적절한 「케스」 인 경우에는

職業훈련 (training for anew vocation) 기간중 日 80 원 까지 日給 養金 給여를 지급 받는다.

~129~

傷病보험 (invalidity insurance) 하에서
서는 세심히 결정된 조건에서 피보험자가 새로운
自營活動 (self employed activity)을
할 수 있도록 再活策의 하나로 재정보조
(financial support)에 대해 특별한 기
성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

(i) 사회복지

(Ministry of Social Affairs)

직업 기술학교 학생들은 모험에 의해
지급된다.

보조적 현금급여 (Supplementary
cash grant)는 직업 기술학교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에서 지급한다.

설명 및 傷病후 再活費가 失業보험계획
(the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에 의해 지불되는 드문 경우에 後惠者는
통역 기간동안 失業給與額 현금보조(Cash
assistance) 또는 이에 대한 시간 (Time-limit) 이 만료 되었을 때는 긴급
원조 (emergency assistance) 와 여
타 및 통역과 관련하며 추가 경비를 지급
받는다

사회 보험기관은 이밖에 再活이 끝나고
就業이 되었을 때도 곤궁한 학생에 대해
현금手当 (cash allowances) 의 특
전을 준다.

ii 오스트리아 사회보험 철회 연맹.

(Federation of Austrian Social Insurance Institutes)

(a) 연금보험기관 (the pensions insurance

Institutions) 은 필요한 우지비를 부담하고
정상소득점도에 이르기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는 의류 및 작업도구 구입비를 때루해 줄수
도 있다.

(b) 再授이 성공한뒤에 연금 자격조건이 여전히
적용될수 있는지 즉 소득능력 (earning cap-
acity) 이 회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검
토를한다. 만일 소득능력이 회복되었으면 빈곤
하지 않는가의 여부까지 검토한다.

연금의 제한 (time-limit) 은 이 추가 검토
의 기한에 따라 좌우된다.

1개월동안의 연금중단의 결정이 내려지면
受惠者에 대한 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중단된
다.

필요한 유지비용외한 보조금(Contribution)은 再活이 끝남과 동시에 중단된다. 正當소득액정도의 수당은 헛어도 2년뒤에 중단된다.

(9)에서 언급한바와같이 때 「케이스」마다 지급되는 급여액은 다르며 따라서 전액수당(Lump-sum allowances)의 문제는 일어나지않는다. 그러나 현금 급여는 작업과정에서 피보험자의 再建(reintegration)을위해 지급된다.

늘 케 이

國立保險院

(National Insurance Institution)

再活기간중 현금급여는 재활현금급여(rehabilitation cash benefit) 1일 현금수당(daily cash allowances)의 형태로 지급된다. 재활현금급여이외에 조건에 따라서 농가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할수도있다.

이러한 보조금 (contributions) 은 이 계획
의 정상비로 증대된다.

현금급여 (자활수당) 는 受惠者가 소득취급
을 할 때 대체로 중단된다

적용과 관련기간이고 또한 지급액이 적을
때는 해당자는 현금급여를 받을수있는 입장
에서 있는것으로 간주된다. 노동불능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 연금은 소득자
능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에 따라 제 명
차를 받게된다.

보조금과 대부보조금 또는 대부 (Contri-
butions and or loans) 는 해당자가
自營者로 자립 할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5. 再活器具 (Appliances for Rehabilitation)

(a) 피보림자에게 제공되는 器具 및 보급품 (Ap-
Pliances and supplies)

(b) 제공조건 (conditions of availability)

캐 너 더

保健福祉部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캐나다 연금 계획 (the Canada Pension plan) 의 재활 규정 (rehabilitation provisions) 에 의한 재활 지구의 제공에 관한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器具는 직업적 자활에 필요할 때 보충 (some source)로부터 공급될 것이다.

프랑스 全國社會保障聯盟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일부 (일부) 체인 지팡이 (crutches) 를 제외하고는 시설과 필요기구를 피보컴자가 임의로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재활기구를 구해 주거나, 차용하는 데는 비용은 器具위원회 (appliances committee) 가 요금료 (cost of charges) 와 대조한 후에 지불될수 있다. 주요한 기구장은 필요한 기구는 재향군인 및 상이군인者 器具센터 (the Appliances centers

of the Ministry of Veterans and War

Victims) 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비용 (financial charge) 은 사회보장기구 (the Social Security bodies) 가 부담한다.

瑞 西 聯邦社会保険庁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다음과 같은 器具를 이용할수 있다.

- 정형기구 (orthopaedic appliances)
- 義手足 (artificial limbs)
- 保護 및 운동기구 정형시 (orthopaedic shoes) 보호발넛트
- 두개골 (Cranium) 부상용기구
- 補聽器와 안경같은 감각기구 (Instruments for the sense organs)
- 소변기 인공항문같은 내부기관기구 (Instruments for the internal organs)
- 독서기계 신체기계같은 일상생활용기구 (instruments for daily life)
- 소련 자동차를 포함하여 환자용으로 개조한 이동

기재 (instruments for movement):

○ 기계적 도구 (mechanical appliances) 와 같이 작업위치에 적용하기 위한 補助수단. (auxiliary means).

○ 맹인을 위한 안내개 (犬) (guide-dogs) 와 보청자가 직업활동 (occupational activity) 소득수단. 再活 환경등을 위해 스스로 연습하거나 기능 회복을 위해 지시를 받을때 필요한 도구 (requirements)를 얻을수 있다.

이동도구 (Means of movement)는 비보 험자가 소득을 위해 항구적인 직업에 종사 하거나 선의의 이유에서 본인 혼자서 직장 에 갈수 없을때 위해서 제공된다.

義齒 (dentures) 안경 (spectacles) 義足

(orthopaedic shoes)은 의료 再活 구조조 치 (medical rehabilitation measures) 에 중요한 보조물로 취급된다. 이러한 필요기구들 (requirements)은 증명하거나 또는 때부하여 준다.

미 국 社会 保障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직업적 목적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물리적
보조(physical aids) 가 제공된다.

유 联邦社会 保障院

(Federal Social Security Institute)

傷病 노동자 (invalid workers) 에
대한 직업 재활은 목적에 대한 필수조건
/ 즉 일반 勞組 (working organiza-
tions) 와 기구 (working institu-
tions) 에서 상병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 이 존재와 하던 원칙상 실시된다.

~116~

再活의 機會을 받고 있는 傷疾者 (the
invalid) 를 위해 勞組와 노동기구 (wo-
rking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에서 作業수단 (변장, 기계등) 을 제조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조는 官
제 社會보장기구 (the competent social
security institute) 부담으로 한다

부 록 III

제 3 부

I 각종 再治 「서비스」 및 그 조직 형태

- ① 사회 保障 機構가 直接 제공하는 「서비스」
- ② 사회보장 기구 (Social Security Institute)가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기관에 (agency)서 제공하는 「서비스」
- ③ 다른 기관에서 비용 부담과 제공을 다 맡고 있는 「서비스」

프 랑 스

全國社會保障聯盟 (Na-

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

rity Bodies) 기능 재활원 (Establishmen-

ments for functional rehabilitation)

과 직업자 훈련원은 같은 조건에서 직업상

의 원인으로 인한 노동 붓는법 上の 受惠

者와 다른 법에 의한 受惠者를 판아들인다

1. 이들 조건은 제2부 같은 제목 아래에서
이더 시사한것과 같다.

일 본 労働省(Ministry of Labour).

직업상의 위험(occupational risks)에 관한 보험법 제칙에 의해 再治서비스는
노동자 공공社會保障處(the public social ser-
vices office for workers)가 직업상의 危
險보험(occupational risks insurance) 현재내에서 제공된다. 勞
働者社會保障處는 직업상의 危險 보험 임법에 의해
보험 「서비스」를 이용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
기 위해 정부 자금(government funds) 으로
설치된 공공단체(public body) 이다

労働者社會保障處는 직업危險보험 병원(occupati-
onal risks insurance hospitals) 再治공
장(Rehabilitation workshops) 건강 회복을
위한 설비등을 갖추고 있다

危險보험下的 再治「서비스」는 1차적으로 직업危險
보험병원(the occupational risks insuranc~

ce hospitals) 에서 제공된다.

1. 의료요법 (medical institutions) 이 의한
 再活 「서비스」는 懸 병원 (State hospitals)
 (公社) 병원 같은 의료기관 (medical institu-
 tions) 에 의해 일반적 의료치료 (general
 medical treatment) 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경우 再活에 관계되는 비용을 직장危
 險보험 (occupational risks insur-
 ance) 이 부담한다

再活 「서비스」가 危險보험기관 (risks in-
 surance institutions) 이 인정하는 懸
 一과 公社 또는 私立 병원에서 제공되는 한편
 再活 「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직업危
 險보험 병원이 행한다

2. 再活구제책 (Rehabilitation Measures)

의 受惠者

(a) 受惠者의 범위 (Categories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

~120~

(b) 자격요건 (Conditions of Entitlement)

(c) 적용절차 (Procedure Applied)

프랑스

全國社會保障聯盟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④ 受惠者는 다음과 같다.

(i) 1인 또는 그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임금소득자 (men or women wage earners)

금요의 파다와 성격, 계약의 성격과 유효성 (Validity)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ii) 囚人 노동자 (prison labours)

(iii) 직업학교의 견습생 (apprentices) 및 학생

(iv) 자발적 보험계획 (Voluntary insurance scheme) 에 참여하고 있는 自營者 (self employed persons)

기능적 再活 (functional rehabilitation)

의 자격은 일반적이다.

직업자 補償 자격은 傷害 치료 후의 잔여 정신 및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조건으로 한다.

㉞ 직업적 원인 (occupational character)

의 질병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해당자는 임금 소득자 (wage earner) 이며 질문 / ㉞의 답변에서 밝힌 부류에 속하는 者.

(ii) 법률에 의해 受處 권리가 성립되는 질병은 직업상의 상격을 띤 것에 한한다.

㉟ 社會保障 기금 (social security funds)

은 기능 再活의 문제에만 유효하며 직업상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 (illness) 에 관한 입법을 적용키로 결정할 때 행정적 제한은 없다.

직업자 補償에 있어서 노동 불능자 지도

위원회 (the Departmental committee for the Guidance of Disabled persons)

~122~

의 助言이 필요하다.

3. 각종 再活 「서비스」 의 財政 ~ 受惠者의 특
수 지불. (Special payment)

프 랑 스

全國社會保障聯盟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2부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다.

그러나 / 일 숙박비와 여행비 재 훈련 비
보험금 및 補償器具費는 고용사외 (empl-
oyment occidants) 및 직업상의 질병
보험계정 (occupational diseases risk
account)에서 인출되며 직업상의 질병 보
험 계정은 고용주의 보험에만 의존 노동
자와 고용주의 雙方보험금 (bipartite com-
tributions) 에 의한 社會保險계정 (Social
insurance account) 과 구별 된다.

受惠者는 再活이나 器具를 위한 特別支拂을 할 必要가 있다.

일 본

労働省 (Ministry of Labour)

지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직업상의 危險保險으로 증명된다.

4. 현금 급여 規定 (Provision of Cash Benefits)

㉠ 再活 기간 중.

㉡ 再活 후.

전액 지급.

프 랑 스

全國社會保障 聯盟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ecurity Bodies)

㉠ 직업상의 傷害 피해자 (The victim

of an occupational risk) 는 第 28

條 等인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124~

그 후에는 완쾌할때까지 소득의 3분의 2 (上限) 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사회보험 傷病급여 (invalidity benefits) 의 지급은 유지된다.

보충적 급여 (Supplementary benefits) 의 차
고용 사고 법 (employment accidents legislation) 의 수혜자는 제 1 사회보장 기금 (the primary Social Security Fund) 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다.

④ 再活과 再취업 (re-employment) 이후 여전히 영구 노동 불능 (permanent incapacity) 인 피 보험자는 무능력 정도와 사고나 직업병 이전의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年金額은 傷害의 정도와 세척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한다.

일시 무능력자 (temporary incapacity) 에 대한 급여 지급은 傷害가 완쾌 되는

날 중단된다

① 실업중 傷病피해자 (Victims of unemployment victims) 는 제조 공예 농업분야에서 무이자 대부 (free loan) 를 요구할수 있다.

일 본

労働省 (Ministry of Labour)

급여는 다음과 같다.

노동 불능 급여 (incapacity benefit)

長期傷病- (prolonged invalidity)

급여 신체불구 (physical handicap)

급여.

현금급여는 직업상의 원인으로 인한 傷病보험

제회 (occupational risks insurance

scheme) 아래 보험급여 (insurance

benefits) 로 지급된다.

치료를 떠날 필요가 없이 의료 자활 만으

~126~

로 성공한 뒤에는 의료 급여(*medical care benefit*)와 노동불능급여(*incapacity benefit*)의 지급은 중단된다.

事故(*accident*) 결과나 질병에서 회복한 뒤 再活이 성공한 경우에는 신체불구(*physical handicap*) 연금액은 불구의 감소 정도에 따라 수정된다.

신체불구(*physical handicap*)가 再活후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체 불구에 관한 연금 지급은 불구의 정도에 비례하여 계속된다.

과거 소득력(*earning capacity*) 완전 상실의 경우에 급여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 되었고 기타 신체 불구 급여는 전액(*lump-sum*)의 형태로 지급 되었다.

그러나 66년 2월 1일 직업상의 危險보험법(*occupational risks insurance legislation*) 수정의 결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던 신체 불구 급여의 지급이 연장

~129~
되었으며 노동력을 약간 상실한자를 제외하고는 연금으로 계속 지급된다.

바뀌려하면 전액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들의 소득능력 상실정도가 극히 적다는 사실에 비추어 필요의 대부분을 스스로 충족시킬수 있다고 간주 된다는 것이다.

印度

被 雇 傭 者 社 会 保 險 組 合

(Employees' Social Insurance Corporation)

노동 불능자 (disabled persons) 에 대한 諸 급여의 지급은 「핸드캡」이 계속되는 한 계속된다.

임시 또는 영구노동불능 (temporary or permanent incapacity) 의 경우 노동 불능자에 대한 급여는 「핸드캡」이 계속되는 동안 再 活 기간중이나 후에도 계속 지급된다.

영구 노동불능의 경우 급여는 피 고용자 차
 보험법규 (the Employees' State Insu-
 rance Act) 에 의해 종신 지급된다
 同法 제 51 조는 同法과 시행 세칙에 의해
 노동불능급여 (incapacity benefits) 는
 일시적 노동불능자에게는 「랜드 룰」 기간 동
 안 영구적이거나 완전 노동력 상실자에게는
 종신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직접 사회보장 회사가 지급된다.

이 스타 일

國立 保險院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노동력 상실의 적어도 75 퍼센트 이상인 자
 는 종신 상병연금 (permanent invalidi-
 ty pension) 이외에 다음 조건에 따라 특
 별참가연금 (special attendance pen-
 sion) 과 증여금 (grant) 을 받을수 있다

- (1) 특별 참가 給與 (special attendance

benefit)는 노동불능으로 인한 경비의 지
장 유지 및 계속 작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
당토록 지급된다

- (2) 특별 증여금 (special grant)은 건강상 이
유나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특
별한 設備 (아파트, 자동차 특수작업 시설 등) 에
충당토록 지급된다.

직업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자는 백 (퍼센트)
傷病연금 (invalidity pension)에 해당하는
임시연금 (temporary pension)을 받으며
또한 훈련비 (training fees) 훈련기구
(training appliances) 등 모든 다른 再治
경비 (rehabilitation expenses)를 청구
받을수 있다.

再治 후에 퍼 보림자는 위 언급한 특별수당
(special allowances)은 물론 종신 傷病
연금 (permanent invalidity pension)을
계속 받는다.

이러한 諸項의 계속은 職業再培(vocational training)의 성공 여부에 좌우되
 지 않는다. 또한 다음 7項에 의거 傷疾노
 동자 (invalid worker)의 自營者 (self-
 employed person)으로서 扶養을 위해 全
 額 贈與 (lump-sum grant)가 실시된다.

① 再培 担当者 (Rehabilitation officer)이 최고
 하는 再培 계획 (rehabilitation program)따라
 傷疾 연금 (invalidity pension)을 支給한다.

② 같은 조건 아래서 이 목적을 위해 貸付
 (loans)를 支給한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社会保險協會聯盟

(Federation of Austrian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① 고용상해 (employment injury pensions)나 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s)인 경우에 고용상해연금 (employment injury pensions)과 보완적 현금급여 (supplementary cash benefits)가 事故 보험 계획 (accident

~101~

insurance scheme) 에 의거 事故보험기관에 의해 지급된다.

②) 훈련 또는 재훈련 기간중 필요한 유지비용 최대 2년 동안 정상 소득액과 동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지급은 직업 훈련이 끝나고 노동력을 회복할때 중단된다.

事故보험기관(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 을 再給이 완료된 후에는 노동불능의 정도가 어느정도인가를 새로 판정할수있다.

이새로운 판정 결과에 따라 그때까지 지급되어온 종신연금(permanent benefit (pension)) 의 금액내지 완전 중단을 결정하게된다.

상해자가 새로운 결정을 통고 받은 날 다음달 말부터 새로운 급여(new benefits) 가 증여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된다.

~132~

(c) 피 보험자의 自營者 (self-employed person)로서 의 자립을 위해 全額지급 (lumpsum grants) 도 가능하다.

西 独 農業雇傭事故保險共金聯盟

(Federation of Agricultural Employment Accident Insurance Funds)

再賃거간중 피 보험자는 임금손실 (loss of wages) 의 보상으로 상해수당 (injury allowance) 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상해 연금 (employment injury pension)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결과 노동력이 회복되면 상해수당 (injury allowance) 지급은 중단된다. 상해 연금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다르다. 법률상의 事故보험 계획 (statutory accident insurance scheme) 에 의해 피보험자의 自營者 (self-employed person)로서 의 자립을 위해 수당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연금의 전액 지불로 행한다.

